

경상남도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 변경 협약서

- 사업명 : 경상남도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
- 총 사업기간 : 2025. 11. 28. ~ 2030. 2. 28.
- 총 사업비 : 금3,075,000,000(금삼십억칠천오백만원정)
- ※ 단,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중앙부처 사업관리 기준 및 평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약 당사자
 - 지방자치단체 : 경상남도지사
 - 참여기관 : 경상남도교육감
 - 추진대학 : 4개 대학(이하 “주관대학”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이하 “참여대학”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경남대학교 총장, 인제대학교 총장)
 - 전담기관 : 재단법인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경남RISE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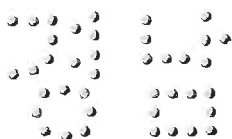
위 경상남도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경상남도”), 경상남도 교육감(이하 “교육청”), 각 추진대학의 총장(이하 “주관대학”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이하 “참여대학”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경남대학교 총장, 인제대학교 총장), 재단법인경상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경남RISE센터”)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계획) ① 경상남도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대학이 최종 수정 제출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을 사업계획으로 한다.

② 최종 수정 제출한 “사업계획”이 사업책임자,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이 변경되어야 할 때는 경남RISE센터의 변경 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일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30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사업 종료 시 사업 정리 필요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① 협약기간은 경남RISE센터에서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협약기간은 연차평가, 중간평가 결과 협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제외한 기존 협약사항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사업연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 평가결과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향후 수정협약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의 수행) 추진대학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① 경남RISE센터는 대학에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② 사업비 지급 시기 및 방식은 경남RISE센터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규모는 추진대학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급 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③ 성과평가(자체평가 등)를 통한 성과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년도 협약 시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다.

제5조(권한과 책임)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추진대학, 경남RISE센터는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관리·운영 지침」(이하 “운영 지침”이라 한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① 경상남도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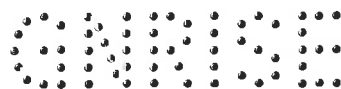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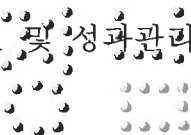
1. 사업 총괄 관리 및 운영
2. 사업계획 수립 총괄
3. 지방비 대응 자금 매칭 및 예산 배분
4. 성과 종합 분석 및 환류, 성과 홍보

② 경상남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 공동 수립
2.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및 지원
3. 고교 대상 사업성과(관리, 활용 및 확산)
4. 정보·자원 등을 포함한 공유·협력·지원

③ 추진대학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협약체결을 위한 신청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협약체결, 참여 및 수행 등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컨소시엄 주관대학으로 참여대학과의 컨소시엄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컨소시엄 주관대학으로 총괄 관리, 사업비 재교부, 집행관리 실적 보고 등 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컨소시엄 참여대학으로 사업추진, 집행, 실적 보고 등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 인력·시설 확보 및 보안관리(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서 및 기초자료 제출·관리 등 각종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8. 성과관리(자체평가),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9. 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금 반납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사업과 관련한 사안 발생 시, 경남RISE센터로 통보에 관한 사항

④ 경남RISE센터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컨소시엄 구성 및 협의를 통한 공동 사업계획 수립 지원
2.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의 사업·성과관리
3. 자체성과평가 및 성과 공유·확산
4. 사업비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지원 조건) 추진대학은 사업기간 동안 “운영 지침”에서 정한 사업 신청 적격 요건과 경남RISE센터가 정한 지원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목표) ① 추진대학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항에 관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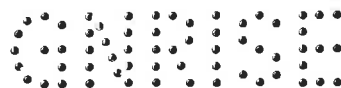
② 추진대학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컨설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경남RISE센터는 성과평가(중간 점검, 연차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추진대학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관리) ① 추진대학은 사업 기간 내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추진대학은 대학 회계(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를 선택하여 “00대학교경남지역 인재육성사업비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컨소시엄 주관대학은 컨소시엄 총괄 사업비 집행·관리 책임 주체로 컨소시엄 참여 대학이 목적에 맞게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추진대학은 사업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경남RISE센터에 정산 결과를 보고하고 사용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추진대학은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경남RISE센터에서 실시하는 정산 및 각종 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로 인해 발생하는 처분 결과에 따른 사업비 반환 의무를 가진다.

제9조(성과관리 및 평가) ① 추진대학의 사업성과 달성을 위하여 주관대학은 실적과 성과를 관리하고 이를 총괄 취합, 조정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경남RISE센터는 사업추진 현황 점검, 성과관리, 자체 성과평가 등을 시행하기 위해 추진대학에 중간, 연차, 수시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남RISE센터는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 현장점검, 서면 평가, 대면 평가, 발표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경남RISE센터는 추진대학의 자체점검위원회 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경남RISE센터는 컨설팅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목표, 사업비, 사업 내용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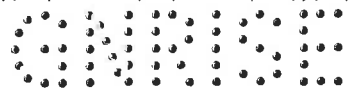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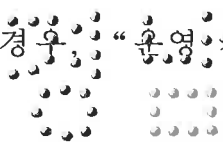
⑥ 경남RISE센터는 추진대학이 사업 기간 내 달성한 목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결과물의 귀속) ① 본 협약에서 “결과물”이란 본 협약상의 사업수행 또는 사업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시설, 설비, 기자재, 장비 등 유형적 결과물 및 기술, 각종 정보, 발견, 발명, 아이디어, 노하우, 샘플, 디자인, 특허권, 특허료, 기술이전료, 산업재산권, 교재개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모두 포함한다.

② 사업의 성과로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은 관계 법령 및 본 협약에 따라 추진대학의 소유로 하되,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변경) 경남RISE센터는 협약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지) 경남RISE센터는 협약당사자가 주요 협약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영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주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추진대학이 허위 자료 제출, 청탁, 외부 압력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경우
3. 사업비 유용·횡령 또는 부정·비리 발생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진대학이 중대한 법령 위반을 한 경우
4. 경남RISE센터의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부도·법정관리·폐업·폐교 등의 사유로 추진대학의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추진대학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7. 한국대학교육협회의 기관평가 결과 ‘미인증’ 판정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상황 변화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수혜 제한) 경남RISE센터는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중이라도 협약 해지, 사업비 삭감 및 환수, 평가 시 감점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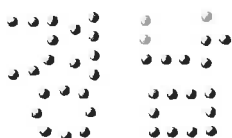
1.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등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
2. 대학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및 이와 유사한 제재가 확인된 경우
3. 추진대학의 입시·학사비리, 총장·이사장 및 대학의 주요 보직자가 연루된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
4. 사업기간 중 추진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비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체 부담

제14조 (제출 및 보고의 의무) ① 추진대학은 사업성과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보고서 작성·제출 및 점검·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경남RISE센터는 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 시 관련 자료 등의 제출, 대학 내 사업추진 부서의 면담, 대학에 대한 현지 방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대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신청서 등의 공개) 추진대학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를 “운영 지침” 및 경남RISE센터가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해석) 본 협약 및 관련 제규정 등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경남RISE센터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7통을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4월 6일

경상남도지사

박 완 수



경상남도교육감

박 중 훈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입학처장)

권 진 회
(임 지 영)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입학취업처장)

박 민 원
(박 상 희)



경남대학교 총장
(입학처장)

박 재 규
(김 태 완)



인제대학교 총장
(입학처장)

전 민 현
(김 명 찬)



재단법인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경남RISE센터장)

황 태 수
(박 지 현)

